

#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(안)

의안 번호	226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3. 8

제출자 : 달성군



## 1. 제안이유

2022년 달성(향토·전통)음식경연대회 미운영으로 2023년도 수입의 예치금 회수 및 지출의 예치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변경되어 지방기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(안)

- 식품진흥기금 총 비교증감액: 금 34,04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세부사업(편성목)	경정액	기정액	증감
수입 변경 계획	수입 총계	186,796	152,751	34,045
	· 세외수입	44,000	44,000	-
	· 보조금	26,000	26,000	-
	· 보전수입 등			
	- 예치금 회수(714-01)	116,796	82,751	34,045
지출 변경 계획	지출 총계	186,796	152,751	34,045
	· 식품진흥(식품진흥기금)	52,500	52,500	-
	· 보전지출(식품진흥기금)	133,756	99,711	34,045
	- 보전지출			
	예치금	103,426	67,711	35,715
	- 반환금 기타	30,330	32,000	△1,670
	시비보조금 반환금	10,330	12,000	△1,670
	과징금 과오납금 반환	20,000	20,000	-
기타	540	540	-	

#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 심의요구서

<p>심의요지</p>	<p>○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(안) 심의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심의사유</p>	<p>○ 기금 결산에 맞는 예치금액 반영 및 보조금 반환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(안) 심의 요구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변경·심의 사항</p>	<p>○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(안) 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19 862 1390 1637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세부사업(편성목)</th> <th>경정액</th> <th>기정액</th> <th>증 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수 입 변경 계획</td> <td>수입 총계</td> <td>186,796</td> <td>152,751</td> <td>34,045</td> </tr> <tr> <td>· 세외수입</td> <td>44,000</td> <td>44,000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· 보조금</td> <td>26,000</td> <td>26,000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· 보전수입 등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- 예치금 회수(714-01)</td> <td>116,796</td> <td>82,751</td> <td>34,04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8">지 출 변경 계획</td> <td>지출 총계</td> <td>186,796</td> <td>152,751</td> <td>34,045</td> </tr> <tr> <td>· 식품진흥(식품진흥기금)</td> <td>52,500</td> <td>52,500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· 보전지출(식품진흥기금)</td> <td>133,756</td> <td>99,711</td> <td>34,045</td> </tr> <tr> <td>- 보전지출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예치금</td> <td>103,426</td> <td>67,711</td> <td>35,715</td> </tr> <tr> <td>- 반환금 기타</td> <td>30,330</td> <td>32,000</td> <td>△1,670</td> </tr> <tr> <td>시비보조금 반환금</td> <td>10,330</td> <td>12,000</td> <td>△1,670</td> </tr> <tr> <td>과징금 과오납금 반환</td> <td>20,000</td> <td>20,000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기타</td> <td>540</td> <td>540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세부사업(편성목)	경정액	기정액	증 감	수 입 변경 계획	수입 총계	186,796	152,751	34,045	· 세외수입	44,000	44,000	-	· 보조금	26,000	26,000	-	· 보전수입 등				- 예치금 회수(714-01)	116,796	82,751	34,045	지 출 변경 계획	지출 총계	186,796	152,751	34,045	· 식품진흥(식품진흥기금)	52,500	52,500	-	· 보전지출(식품진흥기금)	133,756	99,711	34,045	- 보전지출				예치금	103,426	67,711	35,715	- 반환금 기타	30,330	32,000	△1,670	시비보조금 반환금	10,330	12,000	△1,670	과징금 과오납금 반환	20,000	20,000	-	기타	540	540	-
구 분	세부사업(편성목)	경정액	기정액	증 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 입 변경 계획	수입 총계	186,796	152,751	34,0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세외수입	44,000	44,0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보조금	26,000	26,0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보전수입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 예치금 회수(714-01)	116,796	82,751	34,0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 출 변경 계획	지출 총계	186,796	152,751	34,0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식품진흥(식품진흥기금)	52,500	52,5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· 보전지출(식품진흥기금)	133,756	99,711	34,04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 보전지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예치금	103,426	67,711	35,7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 반환금 기타	30,330	32,000	△1,6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시비보조금 반환금	10,330	12,000	△1,6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과징금 과오납금 반환	20,000	20,00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	540	540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관계법령 등 참고사항</p>	<p>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참고

## 상위 및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#### 지방기금법 제11조(기금운영계획의 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 
<개정 2015.7.24.>
-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.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<개정 2015.7.24.>
  - ※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  
(정책사업·재무활동·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)
  - ※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(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)참조
    - 결산에 따른 '예치금' 조정 시, 기존 '재무활동'(예치금의 상위개념) 금액의 20%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30.>